



전기 Q&A

■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176조 표 176-2 유권해석 요청

관련조항 _ 판단기준 제176조

Q

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-1호(2011.01.05) 전기설비기술기준(전기설비)의 판단기준 제176조(분기회로의 시설) 표 176-2와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입니다. 옥내배선의 경우 분기회로용 차단기는 분전반 내에 누전차단기(과부하, 단락보호겸용 - 2P 30AF/20AT 감도전류 30mA 또는 15mA)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의 누전차단기는 동 규정의 표 176-2에 명기된 과전류차단기와 배선용차단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?

A

- 누전차단기 시설은 판단기준 제41조(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), 저압 전로의 과전류차단기 시설은 판단기준 제38조(저압 전로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)에 따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누전차단기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이며, 과전류차단기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과전류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입니다. 누전차단기와 과전류차단기를 별개로 제작하기도 하며, 하나로 통합하여 제작하기도 합니다.
- 판단기준 제176조 표 176-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전류차단기와 전선의 굵기 선정은 누전차단기 선정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. 다만, 과전류차단기와 누전차단기가 하나로 된 겸용 제품인 경우의 누전차단기의 용량은 과전류차단기 용량과 같게 되므로 표 176-2를 적용하시면 됩니다. KEA